



연금제도의 국제 비교 (5): 연금제도의 모수 - 적립률

김동겸 선임연구원

- 소득비례연금제도(earning-related schemes)¹⁾에서 수급자가 은퇴 후 수령하는 급여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는 적립률(accrual rate), 급여산식에 사용되는 개인소득의 측정방식(earnings measures to calculate benefits)과 재평가방식(valorisation) 등을 들 수 있음.
- 적립률 또는 급여적립요율이란 연금지급액을 결정짓는 주요 변수 중 하나로, 근로자가 일년 동안 근무함에 따라 증가하게 되는 연금액의 비율을 의미함.²⁾
 - 일반적으로 적립률은 연금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의 백분율(a percentage of the earnings that are covered by pension schemes)로 표현함.³⁾
 -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국가가 지급해야 할 연금지급액이 늘어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대다수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모수적 개혁(parametric reform)⁴⁾의 일환으로 연금개시연령을 상향 조정하거나, 적립률을 축소시키는 정책을 취함.
- OECD 회원국 중 7개국(호주, 칠레, 덴마크, 아일랜드, 이스라엘, 멕시코, 뉴질랜드)은 제2층의 소득비례연금제도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대다수 국가는 연금산식에 적립률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는 전

1) 소득비례연금(earnings-related scheme) 또는 소득대체연금(income-replacement pensions)은 OECD의 노후소득보장 제도(retirement-income provision)의 분류기준 중 “이층(second tier)”에 해당되는 제도로서, 크게 확정급여형(DB), 점수(points), 명목계정(NDC: notional accounts) 연금제도로 분류할 수 있음.

2) OECD(2005, 2011)에서는 적립률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The accrual rate shows the rate at which benefit entitlements build up for each year of coverage," or "It is the rate at which pension benefits builds up as member service is completed in a defined benefit plan." 한편, 적립률이라는 용어는 저자에 따라 (연간연금)지급률, (이자)발생률, 증액율, 수급률, 연간급여승률, 급여율, 급여적립요율이라는 용어로 대체하여 사용하기도 함.

3) 대다수 국가의 연금제도에서는 연금급여 산정 시 근로자 소득의 전체가 아닌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형태를 띠고 있음. 이와 같이 부과상한을 두는 근거는 고소득 근로자가 대체율을 높이고 싶다면 개별적인 저축을 통해 가능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임.

4) 연금제도의 틀을 전면적으로 개혁하지 않고 연금산식을 구성하는 일부 변수를 조정하는 접근방법을 모수적 개혁(parametric reform, 母數的改革)이라 하는데, 연금지급 개시연령의 연장, 연금지급률 하향조정, 보험요율 인상 등이 이에 해당됨.

통적인 확정급여(DB) 방식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표 1〉 참조).⁵⁾

〈표 1〉 OECD 국가의 소득비례연금(income-replacement pensions)의 적립률

국가	소득비례연금		국가	소득비례연금	
	제도유형 ¹⁾	적립률(%)		제도유형 ¹⁾	적립률(%)
호주	None		일본	DB	0.55
오스트리아	DB	1.78	한국	DB	0.89
벨기에	DB	1.33	룩셈부르크	DB	1.85 [y] ⁵⁾
캐나다	DB	0.63	멕시코	None	
칠레	None		네덜란드	DB	1.75
체코	DB	0.45 [w] ²⁾	뉴질랜드	None	
덴마크	None		노르웨이	NDC	0.98
에스토니아	Points	1.0	폴란드	NDC	0.67
핀란드	DB	1.5 [a] ³⁾	포르투갈	DB	2.25 [w] ²⁾
프랑스	DB / Points	1.75 [w] ⁴⁾	슬로바키아	Points	1.25
독일	Points	1.00	슬로베니아	DB	1.81
그리스	DB	2.57 ⁴⁾	스페인	DB	3.0 [y] ⁶⁾
헝가리	DB	1.22	스웨덴	NDC	1.21 [w]
아이슬란드	DB	1.40	스위스	DB	[w / a]
아일랜드	None		터키	DB	2.00
이스라엘	None		영국	DB	0.89 [w] ⁶⁾
이탈리아	NDC	1.75	미국	DB	0.91 [w] ²⁾

- 주: 1) 2층 소득연계연금의 유형에서 DB는 확정 급여형, NDC는 명목저축계좌를, Points는 점수 제도를 의미함.
 2) [w]는 소득(earnings)에 따라 급여 수령액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체코, 포르투갈, 미국의 경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고소득층보다 급여적립요율이 더 높음.
 3) [a]는 연령(age)에 따라 급여액이 차등 지급됨을 의미하며, 핀란드는 고연령층이 저연령층보다 적립률이 높음.
 4) 프랑스의 경우 퇴직연금제도(occupational plan) 하에서 고소득자의 적립률은 저소득자 보다 높음.
 5) [y]는 근속기간(years of service)에 따라 급여 수령액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며, 룩셈부르크는 근무연수가 길수록 적립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6) 영국의 경우 저소득층의 경우 적립률이 가장 높고, 소득이 증가할수록 적립률이 낮아지다 일정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다시 높아지는 형태를 띤다.

자료: OECD(2011), Pensions at a Glance 2011.

5) 확정급여형에서의 적립률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연금액(DB)은 다음과 같이 산출됨. $DB = \sum_{i=0}^R w_i (1+u)^{R-i} a$ 여기에
 서, R 은 은퇴시점을, w_i 는 i 년도 소득을, u 는 소득재평가 계수를, a 는 적립률을 의미함. 한편, 점수(points)제도에 있어 적립률(effective accrual rate)은 연금점수비용 대비 연금점수 지급액의 비율로 산출함.

■ 소득비례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의 절반 정도는 가입기간 동안 동일한 적립률(linear accrual rate)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개인의 소득, 연령, 가입기간에 따라 매년 얻게 되는 연금급여를 다르게 설정하는 국가 또한 존재함.

● 개인소득에 따라 적립률이 다른 국가는 체코, 포르투갈, 스위스, 미국,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 총 7개 국가임.

– 체코, 스위스, 포르투갈, 미국의 공적연금제도에서는 누진적(progressive)으로 저소득 근로자의 대체율이 더 큰 반면, 프랑스와 스웨덴은 고소득 근로자에 대해 더 높은 대체율의 연금을 지급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 한편, 영국의 경우 적립률이 저소득 계층에서 크고 이후에는 작아졌다가 고소득계층에서 다시 커지는 U자 형태를 보임.

● 한편, 핀란드와 스위스의 경우, 퇴직연금제도(occupational plans)의 적립률은 연령에 따라 증가하는 구조를 띠고 있으며, 룩셈부르크와 터키는 가입기간에 따라 적립률이 차등화 된 형태를 보임.

– 룩셈부르크는 가입이력이 긴 사람들에게 높은 적립률이 적용되는 반면, 스페인과 터키는 경우는 초기 몇 년 동안의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적립률이 적용되고, 후반기에는 가장 낮은 적립률을 적용함.